

<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>

1. 계약목적
- 가.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나. 계약은 본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.
2. 계약기간
- 가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,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- 나.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3.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
-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(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)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, 서면, 전산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가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(2026년 기준)

구 분	1일 금액(원)	월 금액(원)	본인부담금(원)			
			일반 (20%)	감경40% (12%)	감경60% (8%)	100%
1등급	74,590	74,590*30(일)=2,237,700	447,540	268,524	179,016	0
2등급	69,210	69,210*30(일)=2,076,300	415,260	249,156	166,104	0
3등급~ 5등급	63,800	63,800*30(일)=1,914,000	382,800	229,680	153,120	0
식 비	7,500 (2,500×3회)	7,500*30(일)=225,000	225,000			
간식비	500 (1일 2회)	500*30(일)=15,000	15,000			
상급침실 이용료	150,000					
이미용비	3,000					

※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, 식비, 간식비는 0%입니다. (기준 월 2026년 1월)

- 나. 비급여 항목 : 식비,간식비,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, 상급침실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 또는 서면 또는 전산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4. 계약자, 입소자의 의무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가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“을”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“을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-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
-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
- 기타 ‘을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

나. 입소자의 의무

-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(단,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불참 가능하며, 장기불참의 경우 의사소견서 등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.)
-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5.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가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1)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2)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 및 이용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3)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 및 이용자 면회,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- 4) 입소 및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5) 입소 및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6) 입소 및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7)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8) 입소 및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- 9)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10) 시설의 협약,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나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1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- 2)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- 3)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- 4)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5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6)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
6.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 및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(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)
-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